

전주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가단286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한창훈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4. 6.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20. 4. 2.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피고 B과 C 사이에 2020. 4. 6.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C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4. 2. 접수 제14854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고 B은 C에게 같은 등기소 2020. 4. 6. 접수 제15225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2016. 5. 27.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21. 5. 20.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2017. 6. 19. 신용보증원금 2,55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8. 6. 18.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증 하에 기업은행(D지점)으로부터 2016. 6.경 2,000만 원, 2017. 6.경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C은 기업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20. 7. 16. 기업은행에 합계 34,060,925원(= 8,354,118원 + 25,706,807원)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그 금액에 상당하는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

라. 한편,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전인 2020. 4. 2. 피고 A과 사이에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4. 2. 접수 제14854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같은 달 6. 피고 B과 사이에 채권 최고액 3,25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같은 등기소 2020. 4. 6. 접수 제15225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그에 따른 각 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의 채무를 대위 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인 2020. 4. 2. 또는 같은 달 6.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원고와 C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터 잡아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C의 채무를 대위 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C의 무자력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2,860,100원¹⁾이었던 반면, 당시 C의 채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것만 107,101,120원으로서 채무 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들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소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들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법률적 주장이나 증명은 하지도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갑 제10호증의1의 기재에 따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주변에 위치한 같은 지목의 토지 실거래가에 비추어 추산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는 약 26,175,334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C의 채무 초과 여부 및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